

의안번호	2204466
의 퇴 인	이헌승 의원
회 답 일	2024. 10. 21.
추 계 번호	24C419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노인의 운임을 감면하는 운송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4조 3,040억원(연평균 8,608억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억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노인 운임 감면 운송사업자 지원 (안 제26조)	7,338	8,043	8,634	9,256	9,768	43,040	8,60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6조(경로우대)	국가는 동법 제1항에 따라 노인의 운임을 감면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지원함	의무규정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6조(경로우대)	○	○ 최근 실적 추세를 반영하여 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라 국가가 노인의 운임을 감면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현행법 제2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은 수도권 전철과 도시철도¹⁾를 무임으로 이용하고 있고, 새마을호 및 무궁화호에 대해서는 운임의 70%를, 통근열차에 대해서는 운임의 50%를 부담하고 있음

[표 2]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시설 중 운송수단의 종류와 할인율

시설의 종류	할인율(일반운임에 대한 백분율)
1. 철도	
가. 새마을호, 무궁화호	100분의 30
나. 통근열차	100분의 50
다. 수도권전철	100분의 100
2. 도시철도(도시철도 구간안의 국유전기철도를 포함)	100분의 100

자료: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1]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현재 국토교통부는 PSO 보상 사업의 내역사업인 공공운임감면 사업을 통해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KTX(장애인에 대한 운임만 지원)²⁾·새마을호·무궁화호·통근열차·전철의 운임 감면액을 보상하고 있음
 - 보조금을 지원받는 대상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며, 2024년 2,296억 9,100만원의 예산 편성

1) 도시철도 구간 안의 국유전기철도 포함

2) 현재 KTX는 노인에 대하여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30%의 요금 할인을 제공하고 있으나,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별표 1]에 명시된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본 추계서의 추계 대상에서 제외

□ 본 추계서는 현재 국토교통부가 무임승차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 운영 수송수단을 제외하고, 도시철도³⁾를 이용하는 노인에 대한 운임 감면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 (무임승차 인원) 2021~2023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대비 무임승차 인원의 비(ratio)의 변화 추세가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해당 비를 추계기간의 65세 이상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적용하여 무임승차 인원을 산출

[표 3] 65세 이상 인구 및 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 인원 추이

(단위: 천명, 배)

구 분	2021	2022	2023
65세 이상 인구(A)	8,570	8,981	9,436
노인 무임승차 인원(B)	315,423	369,082	417,289
B/A	36.8	41.1	44.2

주: 노인 무임승차 인원은 중복 이용자를 제거하지 않은 수치로 연간 이용 횟수와 동일 의미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3.12. 공표통계) 자료와 국토교통부의 「2023 철도통계연보」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무임수송 운임 단가) 2021~2023년 기준 노인 1인당 무임수송 운임 단가의 변화 추세가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기간의 무임비용 단가를 산출

[표 4]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 인원 및 무임수송 운임 단가 추이

구 분	2021	2022	2023
노인 무임비용(A, 백만원)	423,207	513,281	597,481
노인 무임승차 인원(B, 천명)	315,423	369,082	417,289
노인 1인당 무임수송 운임 단가(A/B, 원)	1,342	1,391	1,432

자료: 국토교통부의 「2023 철도통계연보」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추계결과, 도시철도에 대한 노인 운임 감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4조 3,040억원(연평균 8,608억원)으로 추계됨

3) 이때 도시철도는 도시철도운영기관이 운영하는 수송수단으로,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 부산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주), 의정부경량전철(주), 용인 경량전철(주), 우이신설경전철(주), 김포골드라인운영(주), 남서울경전철(주)이 운영하는 수송수단을 의미함

[표 5] 도시철도에 대한 노인 운임 감면 비용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노인 무임승차 인원(A, 천명)	499,213	541,801	576,753	613,860	643,775	—	—
노인 1인당 무임승차 단가 (B, 원)	1,470	1,485	1,497	1,508	1,517	—	—
추가재정소요(A × B, 억원)	7,338	8,043	8,634	9,256	9,768	43,040	8,60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해당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김우림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우림	02-6788-3738	wrkim@assembly.go.kr